## 임원퇴직금 연봉제 전환 중간정산 후 퇴직금제도로 재전환 컨설팅

### 컨설팅 포인트



### (1)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시점 실무 처리 재확인

- 중간정산 결의 의사록 작성여부,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 정산여부확인!

#### (2) 연봉제에서 퇴직금제로 재전환 실무 처리

- 중간정산 후 2~ 3년 시점 이후,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퇴직금제도로 재전환할 수 있음



# 연봉제 전환 중간정산 후 다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

임원에 대한 급여를 **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**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새롭게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하여는 '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'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동 과정이 특정 임원에 대한 자금대여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
(서면법인-411, 2017. 6. 22)